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1. 원전 주변지역 확대시 주변지역 인구수 현황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발전소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인접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u>5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	제2조(정의) ----- ----- ----- ----- ----- ----- ----- ----- ----- ----- ----- <u>-15킬로미터-</u> ----- ----- ----- ----- -----

현행	개정안
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 ----- -----.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 제2조는 주변지역을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하되,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는 수계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¹⁾²⁾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로 관련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본지원사업) 원전의 경우 기본지원금 30% 이내 지원 사업 수행 가능
(특별지원사업) 발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내 특별지원금 지원 가능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5km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은 피해보상이 아닌 전원개발의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³⁾,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조에서 지원범위만 늘어날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되어⁴⁾ 기존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며,⁵⁾

3)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피해 배상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원전의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는 「토지보상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4)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 대상 추계시 1인당 지원규모는 현행 11.8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참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현행 유지 시 1인당 지원규모 현황 (2024.5. 기준)

구 분	현 행(5km)			확대시(15km)		
	주변	주변외	계	주변	주변외	계
인구수(명)	135,472	655,753	791,225	763,294	1,789,737	2,553,031
총지원금*(억원)	654	280	934	654	280	934
1인당 지원금(원)	482,757	42,700	118,045	85,681	15,645	36,584

* 주변지역과 주변외지역(주변지역이 속한 시·군·구 중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23년 467억원)과 사업자지원금('23년 467억원)을 합산

5) <원전 소재 지자체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특히 원전 등 주요 발전원의 경우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큰 관련이 없는 지자체까지 지원금이 분산될 수 있어 지자체의 발전소 유치의지가 저하되고 지역의 발전소 건립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재 주변지역의 범위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⁶⁾, 법 제정 이후 30년 이상 지난 최근에는 과거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으므로, 이러한 상황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1

지자체	검토 의견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고성군 통영시 하동군 (반대)	○ 발전소주변지역 확대(15km)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부재(주변지역 포함에 대한 지역 분열·혼란 및 지자체 간 갈등 유발) ○ 별도 재원 증액 없이 한정된 지원금으로 지원지역만 확대시 실질적 지원금 감소에 따른 기존 주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예상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률적인 주변지역 확대가 아닌 발전원별 특성 고민 필요 ○ 5킬로미터 이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수
양산시 (일부 찬성)	○ 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보상 등 발주법의 목적과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방사능방재법 취지 고려시 원전에 대한 주변지역 범위 확대타당 ○ 원전 외 나머지 발전소는 건설 및 가동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5km를 초과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지역 범위 확대 불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 동력자원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89.5.

[참고 1]

원전주변지역 확대 시 읍·면·동 인구수 현황

(‘24.5.31. 기준, 단위 : 개, 명)

사업소	현행(5km)			확대시(15km)		
	지자체	읍면동	인구수	지자체	읍면동	인구수
고리 새울 본부	기장군 (177,341)	장안읍	8,759	기장군 (177,341)	장안읍	8,759
					일광읍	29,811
		일광읍	29,811		정관면	79,494
					철마면	7,557
					기장읍	51,720
	울주군 (219,058)	온양읍	28,142	울주군 (219,058)	온양읍	28,142
					서생면	8,510
		서생면	8,510		온산읍	19,434
					청량면	19,722
					웅촌면	7,519
				울산 남구 (305,282)	선암동	13,379
				양산시 (363,136)	서창동	27,131
					평산동	29,148
					소주동	20,198
					동면	49,493
				부산 해운대구 (377,060)	반송2동	21,283
				부산 금정구 (213,399)	선두구동	2,070
한빛 본부	영광군 (51,048)	홍농읍	6,666	영광군 (51,048)	홍농읍	6,666
					법성면	4,832
		법성면	4,832		백수읍	4,435
					영광읍	21,883
		백수읍	4,435		군서면	2,230
	고창군	상하면	2,245	고창군	상하면	2,245

사업소	현행(5km)			확대시(15km)			
	지자체	읍면동	인구수	지자체	읍면동	인구수	
	(51,401)			(51,401)	심원면	2,346	
					아산면	2,485	
					대산면	2,978	
					해리면	2,526	
					무장면	2,650	
					공음면	2,306	
월성 본부	경주시 (246,081)	양남면	6,321	경주시 (246,081)	양남면	6,321	
		문무대왕면	4,123		문무대왕면	4,123	
					감포읍	5,226	감포읍
					울산 북구 (216,895)	강동동	15,902
						농소1동	35,672
						농소2동	41,939
				농소3동		36,460	
				송정동		36,243	
				효문동		29,412	
				포항 남구 (223,574)	장기면	3,832	
	한울 본부	울진군 (46,296)	울진읍	13,450	울진군 (46,296)	울진읍	13,450
			죽변면	6,117		죽변면	6,117
						북면	6,835
			삼척시 (62,460)	근남면		2,683	
				금강송면		1,202	
			원덕읍	3,115			
				가곡면	682		
5개본부	791,225	14개	135,472	2,553,031	49개	763,294	